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35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: 2024. 4. 8. ~ 2024. 4. 21.
- 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남이균	1969.00.14.	0178200274100002964	1,146,000	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00
2	백정희	1958.00.02.	0178200274100005966	885,000	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00-0
3	박명수	1976.00.26.	0178200274100008296	31,860,000	전라남도 화순군 석치길 00-0
4	김수진	1969.00.24	0178230274100001656	26,028,000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0 길 00
5	장경기	1980.00.03.	0178200274100007534	31,860,000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 0 길 00-00
6	최희선	1970.00.17.	0178200274100007559	31,860,000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00 길 00
7	조영안	1995.00.17.	0178240274100000145	3,862,500	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000
8	조규묵	1971.00.01.	0178200274100007515	5,310,000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로 000-0
9	오만수	1960.00.01.	0178200274100006020	3,500,000	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00

- 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☎ 062-457-1595, 1596)
- 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- 7.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중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

때까지 부과됩니다.
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 세징수법」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